금산진산~금산(국지도68호선) 도로건설공사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2021. 6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제 1 장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국지도68호선 중 금산군 진산면~금성면 구간의 선형불량 및 도로폭 협소구간 개량 등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지역주민, 관광객 등에게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등

◦본 계획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공사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시행령 [별표2]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대상사업임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마. 도로의 건설	2) 「도로법」 제2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계획(별표 3 제5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또는 제73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도로노선을 선정하는 때
계획노선	총연장 : 10㎞(신설 4.31㎞, 확장 5.69㎞)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1.3 계획의 내용

가. 사 업 명 : 금산진산~금산(국지도68호선) 도로건설공사

나. 위 치

-(시점)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 ~ (종점)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다. 규 모 : L = 10.0㎞(신설 4.31㎞ + 확장 5.69㎞), B=10.0m, V = 60㎞/hr

라. 사업기간 : 2020년 3월 ~ 2022년 3월

마. 사업시행자 / 승인기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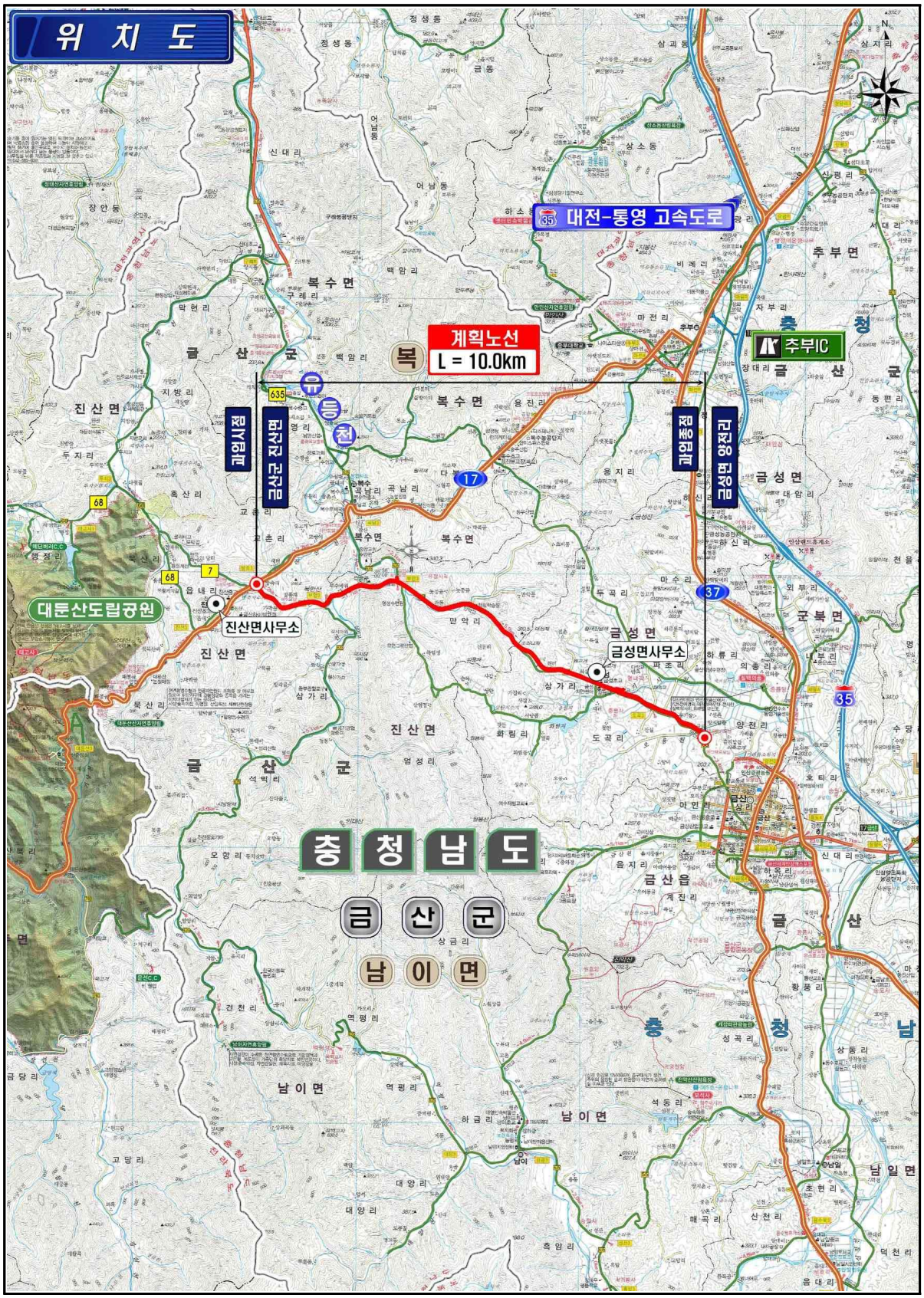

(그림 1.3-1) 계획노선 위치도

1.4 계획의 주요내용

가. 도로제원

◦ 일반구간

<표 1.4-1> 표준횡단면도(일반구간)

구 분		폭 원	횡단면도
전체폭원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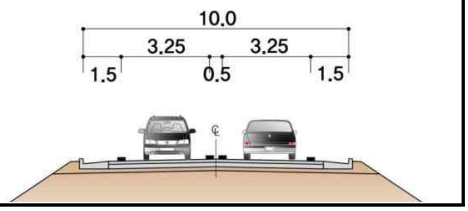
차 로 폭		2@3.25=6.5	
중 분 대		0.5	
길 어 깨	좌측	1.5	
	우측	1.5	

◦ 교량구간

<표 1.4-2> 표준횡단면도(교량구간)

구 분		폭 원	횡단면도
전체폭원		1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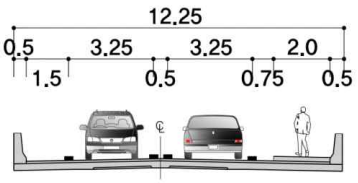
차 로 폭		2@3.25=6.5	
중 분 대		0.5	
길 어 깨	좌측	2.0	
	우측	3.25(보도포함)	

◦ 마을 통과구간(보도편측설치, 선별적용)

<표 1.4-3> 표준횡단면도(마을 통과구간)

구 분		폭 원	횡단면도
전체폭원		1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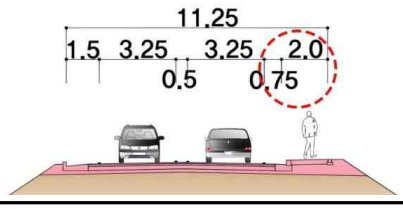
차 로 폭		2@3.25=6.5	
중 분 대		0.5	
길 어 깨	좌측	1.5	
	우측	2.75(보도포함)	

◦ 농경지 통과구간(농기계겸용, 선별적용)

<표 1.4-4> 표준횡단면도(농경지 통과구간)

구 분		폭 원	횡단면도
전체폭원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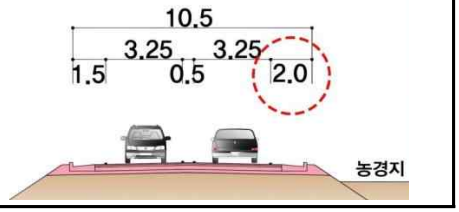
차 로 폭		2@3.25=6.5	
중 분 대		0.5	
길 어 깨	좌측	1.5	
	우측	2.0	

나. 주요 시설계획

1) 교　량 : 5개소 / 190m

◦진산천교(15m), 유등천교(50m), 만악천교(15m), 기사천교(90m), 오룡천교(20m)

2) 교차로 : 8개소

<표 1.4-4> 주요 교차로 계획현황

구분	교차로명	위치 (STA)	간격 (㎞)	교차로형식	접속도로	비고
1	방축삼거리	0+000	-	평면3지	국도17호선 (대둔산로)	기존
2	부암삼거리1	1+580	1.58	회전교차	지방도635호선 (휴양림로)	변경
3	부암리입구	1+850	0.27	평면4지	기존도로	기존
4	부암삼거리2	3+220	1.37	회전교차	지방도635호선 (배내미로)	변경
5	엄정삼거리	3+340	0.12	평면3지	군도4호선 (화엄로)	기존
6	금성사거리	8+400	5.06	평면4지	면도101호선, 군도13호선 (상가1길, 파초1로)	기존
7	도곡사거리	9+240	0.84	평면4지	군도3호선 (잔실길, 파초로)	기존
8	도곡삼거리	9+460	0.22	평면3지	면도103호선 (하류길)	기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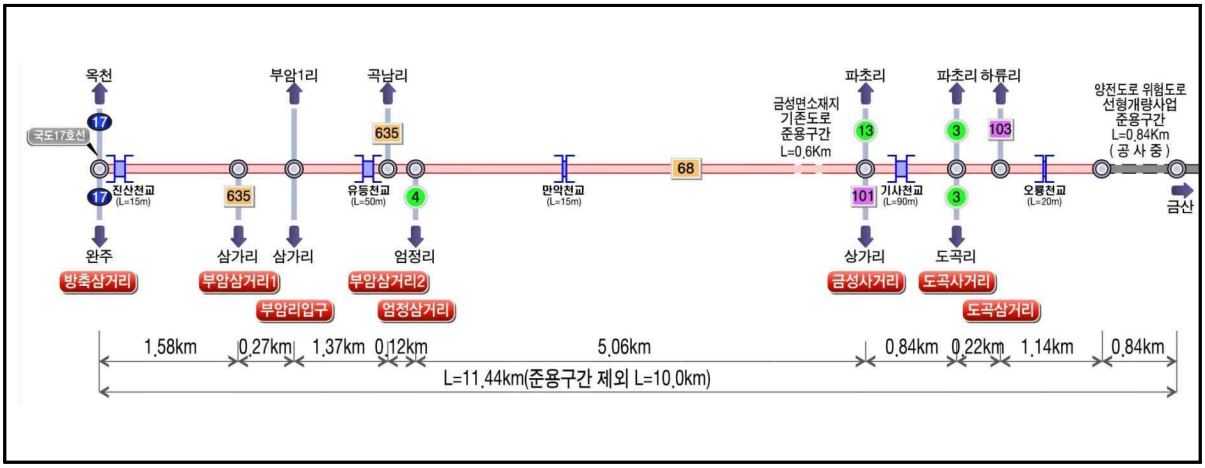

(그림 1.4-1) 주요 교차로 배치 계획도

제 2 장 주민의견수렴 개요

2.1 주민의견수렴 개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제15조(설명회의 개최), 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실시함

2.1.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공고

가. 공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1-6호

◦신문 : 신아일보(중앙일간지), 충청투데이(지방일간지)

◦홈페이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2021년 1월 22일 ~ 2021년 2월 22일(20일간, 공휴일 제외)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금산군청 건설교통과, 금산군 진산면·금성면·금산읍 행정복지센터

다. 공람내용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 공고 및 공람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공고 및 공람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전문

◦공람장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보고서, 의견제출서(양식)

라.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제출기간 : 2021년 1월 22일 ~ 2021년 3월 1일(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서면 제출

마. 제출의견 : 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1-6호

금산진산~금산(국지도68호선)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따라 "금산진산~금산(국지도68호선) 도로건설공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1. 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금산진산~금산(국지도68호선) 도로건설공사
○ 위　　치 :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
○ 사업시행자 및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사업내용 : 연장 10.0km(B=10.0m, 2차로 신설 및 확장)

2.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2021. 01. 22(금) ~ 2021. 02. 22(월) (20일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금산군청 건설교통과, 금산군 진산면행정복지센터, 금산군 금성면행정복지센터, 금산군 금산읍행정복지센터

3.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 2021. 02. 17(수) 10:00 ~ : 금산군 진산면 행정복지센터(2층 회의실)
○ 2021. 02. 17(수) 14:00 ~ : 금산군 금성면 행정복지센터(2층 회의실)

* 추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추이 및 중대본의 방역지침에 따라 설명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조정 시 재공고 등을 통해 통보 예정

4.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간 :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
○ 제출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금산군청 건설교통과, 금산군 진산면행정복지센터, 금산군 금성면행정복지센터, 금산군 금산읍행정복지센터

5. 기타사항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공고문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요약문만 게시)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하였으며, 공람 및 설명회 개최 일정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하지 아니하고, 본 공고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임용만, ☎042-670-3515)로 문의바랍니다.

(그림 2.1.1-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문

신아일보	충청투데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1-6호 **금산진산~금산(국지도68호선)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따라 "금산진산~금산(국지도68호선) 도로건설공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1. 22. 대 전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1. 계획의 개요 ㅇ 계 획 명 : 금산진산~금산(국지도68호선) 도로건설공사 ㅇ 위 치 :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 ㅇ 사업시행자 및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ㅇ 사업내용 : 연장 10.0km(B=10.0m, 2차로 신설 및 확장) 2.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ㅇ 공람기간 : 2021. 01. 22(금) ~ 2021. 02. 22(월) (20일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ㅇ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금산군청 건설교통과, 금산군 진산면행정복지센터, 금산군 금성면행정복지센터, 금산군 금산읍행정복지센터 3.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ㅇ 2021. 02. 17(수) 10:00 ~ : 금산군 진산면 행정복지센터(2층 회의실) ㅇ 2021. 02. 17(수) 14:00 ~ : 금산군 금성면 행정복지센터(2층 회의실) * 추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추이 및 중대본의 방역지침에 따라 설명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조정 시 재공고 등을 통해 통보 예정 4. 주민의견 제출 ㅇ 제출기간 :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 ㅇ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 ㅇ 제출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금산군청 건설교통과, 금산군 진산면행정복지센터, 금산군 금성면행정복지센터, 금산군 금산읍행정복지센터 5. 기타사항 ㅇ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공고문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요약문만 게시)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하였으며, 공람 및 설명회 개최 일정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하지 아니하고, 본 공고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임용만, ☎042-670-3615)로 문의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1-6호 **금산진산~금산(국지도68호선)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따라 "금산진산~금산(국지도68호선) 도로건설공사" 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1. 22. 대 전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금산진산~금산(국지도68호선) 도로건설공사 ■ 위 치 :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 ■ 사업시행자 및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사업내용 : 연장 10.0km(B=10.0m, 2차로 신설 및 확장) 2.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2021. 01. 22(금) ~ 2021. 02. 22(월) (20일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금산군청 건설교통과, 금산군 진산면행정복지센터, 금산군 금성면행정복지센터, 금산군 금산읍행정복지센터 3.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 2021. 02. 17(수) 10:00 ~ : 금산군 진산면 행정복지센터(2층 회의실) ■ 2021. 02. 17(수) 14:00 ~ : 금산군 금성면 행정복지센터(2층 회의실) * 추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추이 및 중대본의 방역지침에 따라 설명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조정 시 재공고 등을 통해 통보 예정 4.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간 :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 ■ 제출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금산군청 건설교통과, 금산군 진산면행정복지센터, 금산군 금성면행정복지센터, 금산군 금산읍행정복지센터 5. 기타사항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공고문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요약문만 게시)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하였으며, 공람 및 설명회 개최 일정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하지 아니하고, 본 공고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임용만, ☎042-670-3615)로 문의바랍니다.

(그림 2.1.1-2) 신문공고

(그림 2.1.1-3)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현수막 개시

(그림 2.1.1-3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현수막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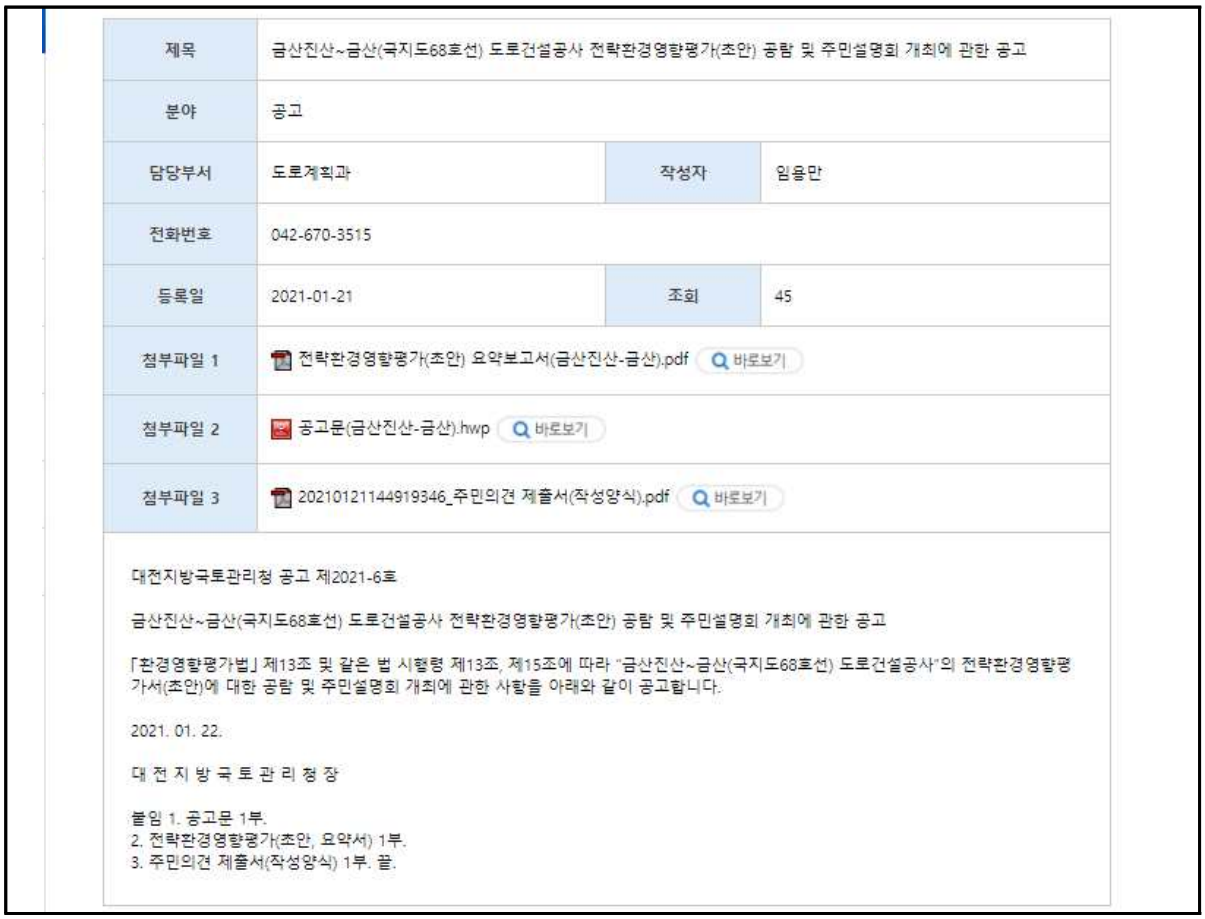

제목	금산진산~금산(국지도68호선)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		
분야	공고		
담당부서	도로계획과	작성자	임용만
전화번호	042-670-3515		
등록일	2021-01-21	조회	45
첨부파일 1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보고서(금산진산-금산).pdf 바로보기		
첨부파일 2	공고문(금산진산-금산).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3	20210121144919346_주민의견 제출서(작성양식).pdf 바로보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1-6호

금산진산~금산(국지도68호선)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따라 "금산진산~금산(국지도68호선) 도로건설공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1. 22.

대 전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붙임 1. 공고문 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서) 1부.
3. 주민의견 제출서(작성양식) 1부. 끝.

(그림 2.1.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그림 2.1.1-5)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2.1.2 주민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 2021년 2월 17일(수) 10시 진산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2021년 2월 17일(수) 14시 금성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나. 주　　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다. 주요내용

- 참석자 소개, 계획의 개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내용, 질의 및 답변

라. 참석인원

- 지역주민, 사업 관계기관(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금산군, 진산면, 금성면), 경동엔지니어링(환경영향평가), 한맥기술(기본 및 실시설계)

마. 진행순서

1) 참석자 소개
2) 계획의 개요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설명
3) 질의 및 답변, 의견제시 등

바. 의　　견 : 환경관련 의견 없음

(그림 2.1.2-1) 주민설명회 진행사진

금산진산~금산(국지도68호선)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 사 업 명 : 금산진산~금산(국지도68호선) 도로건설공사

○ 일　　시 : 2021년 02월 17일 (수) 10:00

○ 장　　소 : 금산군 진산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연번	성명	주소	연락처	체온(℃)	호흡기[1] (O/X)	해외여행[2] (O/X)	자가격리[3] (O/X)	서명

1) 호흡기 증상(기침, 가래, 콧물, 인후통 등) 유 · 무

2) 최근 2주(14일) 이내 해외 입 · 출국자 해당 유 · 무

3) 최근 2주(14일) 이내 보건당국으로부터 가족, 동거인 또는 본인 중 자가격리를 안내받거나 자가격리 중인 대상자 유무

(그림 2.1.2-2)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단(진산면 행정복지센터)

연번	성명	주소	연락처	체온(℃)	호흡기[1] (O/X)	해외여행[2] (O/X)	자가격리[3] (O/X)	서명
	석 찬섭			34.5	X	X	X	석 찬섭
	안창선			36.3	X	X	X	[illegible]
	엄기숙			36.6	,	X	X	[illegible]
	진경석			35.5	X	X		[illegible]
	김성학			35.2	X	+	+	김성학
	최상휘			34	X	X	X	[illegible]
	홍영기			35	X	X	X	홍영기
	박 영덕			35.3	X	X	X	[illegible]
	최 영수			34.5	X	X	X	[illegible]
	신희상			35	X	X	X	신희상
	박광근			34	,	,	X	박광근
	고영국			35.	X	X	X	고영국
	강중건			36	X	X	X	강중건

1) 호흡기 증상(기침, 가래, 콧물, 인후통 등) 유 · 무
2) 최근 2주(14일) 이내 해외 입 · 출국자 해당 유 · 무
3) 최근 2주(14일) 이내 보건당국으로부터 가족, 동거인 또는 본인 중 자가격리를 안내받거나 자가격리 중인 대상자 유무

(그림 2.1.2-2 계속)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단(진산면 행정복지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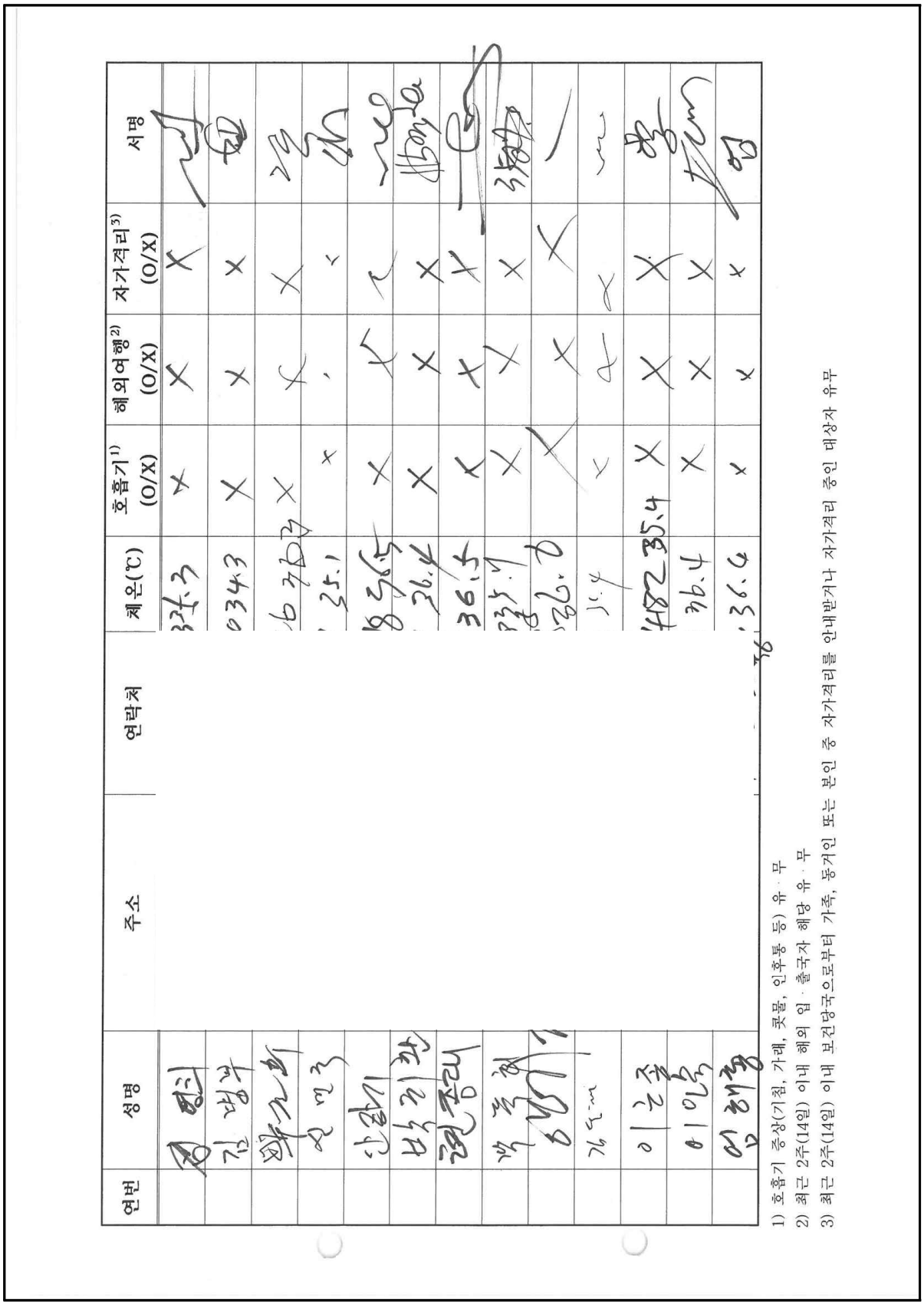

연번	성명	주소	연락처	체온(℃)	호흡기[1] (O/X)	해외여행[2] (O/X)	자가격리[3] (O/X)	서명

1) 호흡기 증상(기침, 가래, 콧물, 인후통 등) 유 · 무
2) 최근 2주(14일) 이내 해외 입 · 출국자 해당 유 · 무
3) 최근 2주(14일) 이내 보건당국으로부터 가족, 동거인 또는 본인 중 자가격리를 안내받거나 자가격리 중인 대상자 유무

(그림 2.1.2-2 계속)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단(진산면 행정복지센터)

연번	성명	주소	연락처	체온(℃)	호흡기[1] (O/X)	해외여행[2] (O/X)	자가격리[3] (O/X)	서명
	신지랑			36.4	X	X	X	신지랑
	정재근			34.3	X	X	X	정재근
	서명식			36.9	X	X	X	서명식
	임재원			36.5	X	X	X	임재원
	이용진			35.9	X	X	X	[illegible]

1) 호흡기 증상(기침, 가래, 콧물, 인후통 등) 유 · 무
2) 최근 2주(14일) 이내 해외 입 · 출국자 해당 유 · 무
3) 최근 2주(14일) 이내 보건당국으로부터 가족, 동거인 또는 본인 중 자가격리를 안내받거나 자가격리 중인 대상자 유무

(그림 2.1.2-2 계속)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단(진산면 행정복지센터)

금산진산~금산(국지도68호선)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 사 업 명 : 금산진산~금산(국지도68호선) 도로건설공사

○ 일 시 : 2021년 02월 17일 (수) 14:00

○ 장 소 : 금산군 금성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연번	성명	주소	연락처	체온(℃)	호흡기[1] (O/X)	해외여행[2] (O/X)	자가격리[3] (O/X)	서명
1	[illegible]			36.2	X	X	X	[illegible]
	[illegible]			36.4	X	X	X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X	X	X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	〃	[illegible]
	[illegible]			36.2	〃	X	X	[illegible]
	[illegible]			36.4	X	X	X	[illegible]
	[illegible]			36.6	X	X	X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X	X	X	[illegible]

1) 호흡기 증상(기침, 가래, 콧물, 인후통 등) 유 · 무

2) 최근 2주(14일) 이내 해외 입 · 출국자 해당 유 · 무

3) 최근 2주(14일) 이내 보건당국으로부터 가족, 동거인 또는 본인 중 자가격리를 안내받거나 자가격리 중인 대상자 유무

(그림 2.1.2-3)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단(금성면 행정복지센터)

연번	성명	주소	연락처	체온(℃)	호흡기[1] (O/X)	해외여행[2] (O/X)	자가격리[3] (O/X)	서명

1) 호흡기 증상(기침, 가래, 콧물, 인후통 등) 유 · 무
2) 최근 2주(14일) 이내 해외 입 · 출국자 해당 유 · 무
3) 최근 2주(14일) 이내 보건당국으로부터 가족, 동거인 또는 본인 중 자가격리를 안내받거나 자가격리 중인 대상자 유무

(그림 2.1.2-3 계속)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단(금성면 행정복지센터)

2.1.3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 등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내용

가. 의견제출

◦ 금강유역환경청

◦ 충청남도

◦ 금산군(의견없음)

나.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반영내용

<표 2.1.3-1>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반영여부

의견내용	반영여부		비고
□ 금강유역환경청			
1.총괄			
가. 본 계획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금산읍 상리 일원 신설 및 확포장을 포함한 도로건설 계획으로서, 이 검토의견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평가서'라 한다)에 제시한 저감방안을 포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작성하여야 함	반영	◦ 평가서(초안) 검토의견과 저감방안을 포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작성함	
나. 관계 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를 종합하여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제시하고, 반영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반영	◦ 관계 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를 종합하여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제시하고, 반영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함	
2.계획의 적정성			
가. 아래 검토의견에 따른 환경적 측면에서 각 대안별 구체적인 예측영향 등을 비교·평가하여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여야 함			
◦ 사업과 관련된 계획·입지·저감방안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획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여야 함	반영	◦ 사업과 관련된 계획·입지·저감방안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획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작성함	

<표 2.1.3-1 계속> 주민, 관계행정 기관의 의견 및 반영여부

의견내용	반영여부		비고
나. 환경보전계획 및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을 수립·검토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반영	◦사업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을 수립·검토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다. 사업추진 타당성 확보를 위해, 기존도로 대비 변경사항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선형개량구간과 협소구간 등은 설계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반영	◦기존도로 대비 변경사항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선형개량구간과 협소구간 등은 설계근거를 제시함	
3. 입지의 타당성			
가. 수환경의 보전			
◦사업노선 중 일부 구간이 삼가천 및 소란제(저수지)와 인접(24쪽)해 있으므로 하천구역 및 저수지 방향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반영	◦계획수립시 하천 및 저수지의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함	
-하천 및 저수지로부터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신규 및 확장 노선의 경우 이격거리 제시	반영	- 하천 및 저수지 점용구간에 대해 완충공간 등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격거리를 제시함	
◦수질오염총량 관련(배출부하량 할당내역 등)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추후반영	◦추후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시 수질오염총량을 할당 받는 것으로 금산군과 협의함	
나. 토양			
◦조사 결과 S-1,2 지점에서의 불소 농도가 최대 556 ㎎/㎏으로 토양오염우려기준(1지역 기준, 400 ㎎/㎏)을 초과하는 수준이므로(350쪽)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포함하는 토양이 외부로 이동될 경우 오염의 확산 및 향후 정화책임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계획 수립 시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추후반영	◦토양오염우려기준(1지역 기준) 초과 지역에서 발생하는 절토량은 전량 계획노선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표 2.1.3-1 계속> 주민, 관계행정 기관의 의견 및 반영여부

의견내용	반영여부		비고
- 오염원 확인 및 주변 유사 오염도 및 토양·지질 특성을 갖는 지역의 범위 확인하고, 토공 계획 수립 시 확인 내용을 고려하여야 함	반영	- S-1,2 지점의 경우 농업활동 외 별도의 오염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금산군 지역 일대는 지질분포에 기인한 자연기원 양상의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자연기원 환경오염 취약성 평가 및 관리방안 수립, 201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다.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기존도로 준용 및 미준용 연장을 재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함	반영	◦ 기존도로 준용 및 미준용 연장을 재검토하여 제시함	
-평가서 1쪽 등(신설 3.1㎞, 확포장 6.9㎞), 평가서 30쪽 삽도(신설 1.6㎞, 확포장 8.4㎞) 상이하게 제시	반영	◦ 신설 및 확포장 구간을 재검토하여 제시함	
◦ 지형변화지수가 제시 부분(11, 231, 451쪽 등)마다 상이하므로 해당 부분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반영	◦ 지형변화지수를 제시함	
◦ 기존도로 미준용 구간 활용 및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반영	◦ 기존도로 미준용 구간 활용 및 처리방안을 제시함	
라.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의 보전			
◦ 사업노선의 훼손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생태·자연도 등급별 편입 면적 및 비율을 식생보전등급과 중첩하여 제시하여야 함	반영	◦ 비교안별 생태·자연도 등급별 편입 면적 및 비율을 식생보전등급과 중첩하여 제시함	

<표 2.1.3-1 계속> 주민, 관계행정 기관의 의견 및 반영여부

의견내용	반영여부		비고
□ 충청남도			
□ 검토의견			
◦ 본건은 국지도68호선 중 금산군 진산면~금산읍 구간의 선형 불량 및 도로폭 협소 구간을 개량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지역발전 촉진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으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난개발을 지양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반영	◦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난개발을 지양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계획함	
◦ 금회 계획노선 중 생태·환경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포함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발을 지양하고,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반영	◦ 금회 계획노선 중 생태·환경적 가치가 높은 지역은 없으며, 추후 계획 변경 등으로 생태·환경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불가피할 경우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겠음	
◦ 사업 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주변 생활환경 영향 등이 최소화되도록 개발 규모의 적정성과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의 피해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반영	◦ 자연환경 훼손, 주변 생활환경 영향 등이 최소화되도록 개발 규모의 적정성과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의 피해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음	
◦ 환경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며, 지역주민 등이 환경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극 검토·조치하고, 사업 승인기관(사업시행자) 책임하에 민원을 해결하여야 함.	반영	◦ 환경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강구·시행하고, 지역주민 등이 환경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극 검토·조치하겠음	
◦ 본 검토의견 및 평가서에 제시한 환경저감방안을 충실히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본 검토내용 이행과 관련하여 타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반영	◦ 평가서에 제시한 환경저감방안을 충실히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겠으며, 타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겠음	

<표 2.1.3-1 계속> 주민, 관계행정 기관의 의견 및 반영여부

의견내용	반영여부		비고
◦주변 기존 도로의 활용성, 교통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 접근성, 안전성, 향후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훼손이 최소화하는 사업계획 수립 및 대안을 설정하여야 함.	반영	◦주변 기존 도로의 활용성, 교통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훼손이 최소화하는 사업계획 수립 및 대안을 설정함	
◦개발사업 시행으로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별도관리지역,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산림축, 자연공원, 노거수, 보호수 등)은 우회하거나 계획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부득이 계획노선에 포함시켜야 할 경우에는 면밀한 환경적 입지검토가 요구됨.	반영	◦계획노선은 자연환경 및 생태계 중점지역 중 생태·자연도 1등급, 별도관리지역,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야생생물 보호구역, 산림축 자연공원은 포함되지 않음 ◦부득이하게 보호수 및 노거수가 계획노선에 포함·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함	
-도로 개설로 인해 지역 생태축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의 훼손·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선의 우회 또는 기 개설된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함.	반영	◦계획노선이 식장지맥을 통과하나, 해당구간은 기존도로를 준용하여 확장하는 구간으로 기 개설된 도로를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하였음	
◦바람길(주풍향)을 고려하고, 생태자연도 및 비오톱 지도 등을 활용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추후 반영	◦현재 노선선정 단계로서, 추후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시 바람길, 생태·자연도 등을 고려하겠음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생태자연도 2등급이면서 생태·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국토환경성 평가등급 1, 2등급지역, 비오톱 1, 2등급 지역이 위치할 경우, 이 지역의 경우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므로 사업계획시 면밀한 검토 및 생태적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추후 반영	◦계획노선은 생태·자연도 2등급, 국토환경성 평가등급 2등급 등이 분포하고 있으며, 현재 노선선정 단계로서, 추후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시 면밀한 검토를 시행하겠음	
-금회 사업지역에 대해 식생보전등급 2등급 이상(도시지역은 3등급 이상), 식생보전등급 3등급 이상(도시지역은 4등급 이상)으로서 급경사지(경사도 20도) 이상의 지역에 해당되는지를 제시하고, 해당될 경우에는 환경 관련 입지의 중점검토가 필요함.	반영	◦식생보전등급 III등급 및 경사도 20° 이상 지역을 분석하여 제시하였으며, 해당구간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함	
◦사업노선 계획시 주변 현황, 노선 구배, 절·성토 최소화, 마을 우회 등 모두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반영	◦사업노선 계획시 주변 현황, 노선 구배, 절·성토 최소화, 마을 우회 등 모두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음	

<표 2.1.3-1 계속> 주민, 관계행정 기관의 의견 및 반영여부

의견내용	반영여부		비고
◦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훼손 수목에 대한 이식 예정 수목량을 총 훼손 수목량의 10% 이상으로 검토하고, 착공 후 보전·이식 가치가 높은 수종이 발견될 경우 추가적인 이식·활용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반영	◦ 비교안별 훼손수목에 대한 이식수목을 10% 이상으로 검토하였으며, 착공 후 보전·이식 가치가 높은 수종이 발견될 경우 추가적인 이식·활용방안을 제시함	
◦ 사업 시행시 절·성토 발생으로 인한 지형의 변화 최소화 및 사면붕괴 등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면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주변지역의 환경과 이질적이지 않은 토지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 지구내에서 발생하는 비옥토, 식생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추후 반영	◦ 추후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시 사면 안정화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며, 발생 비옥토는 사면 식재용, 녹지 복원용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 과도한 절·성토는 가급적 지양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으로 지형변화는 불가피한 만큼 주변 지형과 경관상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 녹화 및 복원계획을 수립 제시하여야 함.	반영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형변화 최소화 및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사면보호 및 사면녹화공법을 제시함	
◦ 또한, 사업시행으로 흙깎기 및 쌓기에 따른 지형변화와 구조물 설치에 따른 경관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을 중심으로 적정 조망점을 선정하고, 경관시뮬레이션 예측을 통해 친환경적인 경관영향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추후 반영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지형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을 중심으로 조망점을 선정하고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추후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시 경관시뮬레이션 예측을 실시하겠음	
◦ 교량 등 각종 구조물 설치 계획 수립시에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색채, 디자인 적용 등을 반영한 경관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성토 및 교량 등 설치로 인한 일조피해 예상지역은 공사 시행전 면적, 재배작물 등의 조사 등이 이루어진 후 일조방해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으로 편입하거나 피해보상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추후 반영 추후 반영	◦ 교량 등 각종 구조물 설치시 주변 경관과 울리는 색채, 디자인 적용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할 계획임 -추후 환경영향평가시 성토 및 교량 등 설치로 인한 일조피해 예상지역은 면적, 재배작물 등의 조사 등이 이루어진 후 일조방해 여부 등을 검토하고 피해보상 등의 대책을 강구하겠음	
◦ 사업시행에 따른 사면 발생구간은 식생 활착, 사면붕괴 예방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완경사로 계획하고, 조속한 생태복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반영	◦ 사면 발생구간은 식생 활착, 사면붕괴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완경사로 계획하겠으며, 조속한 생태복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표 2.1.3-1 계속> 주민, 관계행정 기관의 의견 및 반영여부

의견내용	반영여부		비고
◦도로 조명으로 인하여 야생동물의 서식지 및 농작물의 경작, 인근 주거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예측·분석하고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함.	반영	◦공사시 야간공사 시행으로 인한 조명 및 운영시 도로 조명으로 인한 빛공해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함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금강수계 유등A, 금본D)으로 개발계획시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역개발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함.	추후반영	◦추후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시 수질오염총량을 할당 받는 것으로 금산군과 협의함	
◦우천시에는 공사를 지양하고 유류가 묻은 장비, 폐유 등은 야외 적치를 금지하는 등 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수계 및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함.	반영	◦우천시 공사를 지양하고 발생폐유 등은 폐유보관시설에 보관하는 등 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수계 및 토양오염을 방지하겠음	
◦공사 및 운영시 발생하는 토사 및 비점오염물질 등이 하류 수계 및 농경지에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수계(배수로, 농수로, 하천 등) 및 수질현황, 배수유역 등을 고려하여 적정 저감대책(토사 유출 최소화, 우수배제 및 비점오염원 저감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	반영	◦공사시 및 운영시 발생하는 토사 및 비점오염원 등이 하류 수계, 농경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등을 계획하였으며, 추후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시 우수 배제계획,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구체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할 예정임	
-우기시 절·성토 공사를 자제하고, 지구 경계지역에 가배수로 설치, 배수구역별 충분한 규모의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 등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유류 유출에 대비하여 오일휀스, 유흡착포 등을 충분히 비치하여야 함.	반영	- 우기시 절·성토 공사를 자제하며,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오탁방지막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유류 유출에 대비하여 오일휀스, 유흡착포 등을 비치할 계획임	
-집중호우 등에 대비, 배수구역별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규모의 침사지가 설치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설치 지점, 규모 등을 제시하고, 이들 시설은 조기에 설치되어야 하며 침사지 기능을 항시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준설 등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함.	반영	- 배수구역별 침사지 설치지점, 규모 등을 제시하였으며, 공사초기에 설치하며, 주기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하겠음	
-진산천교, 유등천교 등 교량이 하천을 관통하기에 교량 설치작업 등으로 인한 탁수, 토사 등이 배수로를 통해 하류수계 및 인근 농경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강화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추후반영	- 현재 노선선정 단계로 교각 설치여부, 공법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추후 환경영향평가시 공법 등을 고려한 저감대책을 수립할 계획임	

<표 2.1.3-1 계속> 주민, 관계행정 기관의 의견 및 반영여부

의견내용	반영여부		비고
-현장사무소 설치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이 적정 처리되어 방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반영	- 현장사무소내 오수처리시설 설치시 적정처리후 방류할 계획임	
◦ 운영시 도로 노면 등 비점오염물질이 우수와 함께 수계로 유입되지 않도록 초기우수 배제계획 및 구체적인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계획(설치시설, 위치, 운영관리 등)을 수립하는 등 수질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추후반영	◦ 추후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시 초기우수 배제계획 및 구체적인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겠음	
◦ 금회 계획노선 중 하천을 점용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수환경 보전을 위해 재검토하여 신설 및 개발을 지양하고, 사업시행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추후반영	◦ 계획노선 공사시 하천 및 저수지 점용구간에 대해 추후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시 완충공간 확보 등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하천 및 저수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겠음	
◦ 사업노선 인근에 광산(폐광산, 석면광산 등)이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공사로 인한 중금속, 석면 유출 등 환경피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반영	◦ 계획노선은 기존도로의 확장 및 곡선반경 개선을 위한 일부신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대규모 임야부 훼손, 광산부 횡단 등 대규모 절토 계획은 없어 광산분포에 따른 영향은 미미함	
◦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업 착공 전에 사업지구내 분포하는 지하수 관정을 상세히 조사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폐공 또는 폐쇄 조치하고, 그 결과는 증빙 자료와 함께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보존하는 등 주기적으로 조사·관리하여야 함.	반영	◦ 사업착공 전 지하수 관정을 상세히 조사하여 관련 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 그 결과는 협의내용관리대장에 기록·보존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하겠음	
◦ 사업시행에 따라 녹지축 및 동물이동로 단절로 인하여 각종 야생동물의 서식 및 이동에 영향이 예상되므로 기존 도로와 계획노선의 단절구간에 대한 야생동물의 보호 및 이동통로 확보를 위하여 생태이동통로, 유도휀스 및 생태측구 등의 시설을 적정 설치·운영하고, 추후 도로 이용시 동 노선내 로드킬 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추가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추후반영	◦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녹지축 및 동물이동로 단절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생태측구, 생태통로, 유도울타리 설치를 계획함 - 현재 노선선정 단계로서 추후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시 구체적인 설치구간을 제시하겠음	

<표 2.1.3-1 계속> 주민, 관계행정 기관의 의견 및 반영여부

의견내용	반영여부		비고
◦현지조사 결과, 법정보호종(수달, 황조롱이)이 발견됨에 따라 확인된 법정보호종 등에 대하여 공사 전에 서식지 등을 조사하고, 공사 및 운영시 법정보호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서식, 번식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서식지 등을 발견할 경우 해당 종에 맞는 대책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현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될 경우, 관련 공사를 중단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절한 보전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추후 반영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시 확인된 법정보호종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함 - 추후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시 공사 및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하여 번식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며, 영향이 예상될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절한 보전대책을 수립하겠음	
◦수로박스 및 횡배수관은 야생동물이 이동통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 지침(환경부, 2010.6.)」을 준수하여 녹지축 단절 및 로드킬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생태교량 등을 설치하고, 생태통로 진입부 등은 주변 지형과 식생 등을 고려하여 자생수종이나 식이식물 위주로 설치하여야 함.	반영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녹지축 및 동물이동로 단절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 지침(환경부, 2010.6.)」을 준수하여 생태측구, 생태통로, 유도울타리 설치를 계획함 - 현재 노선선정 단계로서 추후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시 구체적인 설치구간을 제시하겠음	
◦도로 개설에 따른 동물 이동의 단절 및 로드킬 가능성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동물이동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도로 구간내 출현 및 출현 가능성이 있는 동물상을 반영하여 도로공사에 따른 동물의 이동단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정위치에 적정 규모의 저감 시설물 설치를 검토 -생물이동 단절 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물 계획 제시 -사업시행으로 인한 생태적 연결성 단절 및 로드킬 방지 등을 위해 야생동물의 출현빈도가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선형 우회, 생태통로 및 유도울타리 설치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수립하여야 함.	반영 추후 반영	◦야생동물의 이동단절 및 로드킬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감방안(생태측구, 생태통로, 유도울타리)을 제시함 -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야생동물 이동로 단절 예상구간을 제시하였으며, 현재 노선선정 단계로서 추후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시 구체적인 저감시설 설치를 제시하겠음	

<표 2.1.3-1 계속> 주민, 관계행정 기관의 의견 및 반영여부

의견내용	반영여부		비고
-논과 같이 습한 환경을 이루고 있거나, 소형동물의 출현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은 측구, 배수로, 농수로 등에 탈출시설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추후 반영	- 현재 노선선정 단계로서 추후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시 조성계획을 제시하겠음	
◦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 불필요한 투명방음벽 설치 최소화 및'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에 따라 피해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반영	◦ 조류의 충돌 방지를 위하여 투명방음벽 설치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 2019, 환경부」에 따라 피해대책을 마련하겠음	
◦ 사업지구 내 생태계교란식물인 환삼덩굴, 단풍잎돼지풀의 서식이 확인됨에 따라 확산방지 및 제거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반영	◦ 생태계교란 생물 2종(환삼덩굴, 단풍잎돼지풀)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함	
◦ 저영향개발기법(LID)은 도로, 주택단지, 건축물, 가로수 등 곳곳에서 기능할 수 있는 여러방법이 고안됐으며, 수질개선, 열섬현상 완화, 온실가스 저감, 공기질 개선, 지하수 함양 증가, 경관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수반하며 생태계의 자정능력을 살리는데 크게 이바지하므로 적용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야 함.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등은 불투수성 콘크리트·아스팔트 대신 공극이 있는 투수성 포장 적용	추후 반영	◦ 추후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시 계획노선내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등에 투수성포장, 투수블럭 설치 등을 검토할 계획임	
◦ 공사 및 운영시 대기오염물질 환경영향에 대해 예측하여 예측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지 제시하고, 공사 및 운영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부분 반영	◦ 공사 및 운영시 대기오염물질 환경영향에 대해 예측한 결과, 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후 실시설계시 각 정온시설별로 구체적인 영향을 예측하여 제시하겠음	
-공사시 비산먼지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 인근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바, 공사시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반영	-공사시 대기오염물질발생에 따른 영향을 예측한 결과, 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후 실시설계시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구체적으로 예측하여 제시하겠음	
-작업 중 비산먼지 발생으로 주변 지역에 영향이 예상되므로 토사 상·하차시 살수 및 세륜시설 관리 강화, 방진막 설치 보강, 차량 및 적치장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저감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반영	-토사 상·하차시 살수 및 세륜시설 관리 강화, 방진막 설치 보강, 차량 및 적치장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저감방안을 제시함	

<표 2.1.3-1 계속> 주민, 관계행정 기관의 의견 및 반영여부

의견내용	반영여부		비고
◦ 계획노선에 다수의 주거시설 및 학교가 연접해 있어 공사시 공사장비 등 투입 장비에 의한 예상 소음·진동도가 소음·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합리적인 최적 노선 선정 및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추가 저감대책(공사차량 저속운행, 가설방음판넬 설치, 저소음·저진동 장비사용, 작업시간 조정 등)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반영	◦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계획노선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소음진동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장비 운행속도제한, 저소음·진동 장비 투입, 작업시간 조정, 가설방음판넬 설치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함	
-민원발생 지역 및 모니터링 결과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의 경우, 기준을 준수토록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반영	-민원발생, 소음모니터링 결과 환경기준 초과시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계획함	
-발파시 소음·진동 영향예측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함.	반영	-발파시 이격거리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을 검토하여 제시함	
-주변 학교의 경우, 공사 시행 전 학교 관계자와 사전협의를 실시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반영	-주변 학교의 경우, 공사 시행 전 학교 관계자와 사전협의를 실시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계획함	
-가설방음판넬 및 방음벽 설치 시에는 조망권, 통풍 및 마을 출입차량의 안전을 고려하여 사전에 주민과 협의하고, 주변 경관과 외부조망을 고려한 방음판의 재질 및 색채를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수목 식재 등 녹화공법 도입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 인공구조물 설치로 인한 이질감 및 부조화를 최소화하여야 함.	반영	-가설방음판넬, 방음벽 등 구조물 설치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공사시 음원저감대책, 운영시 저소음포장설치를 우선적용할 계획이며, 부득이 하게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주민협의를 통하여 주민불편 및 경관부조화를 최소화 할 계획임	
◦ 공사시 발파작업 등으로 인근 주거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전문가 입회하에 시험발파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장약량의 최소화, 소규모 발파, 발파 사전예고제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파시(시험발파 포함) 소음·진동도를 측정하여 측정결과 인근지역의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별도의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반영	◦ 발파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발파공법을 선정하고 발파전 인근 주민에게 사전 공지할 계획이며, 소음·진동측정 및 분석을 통해 인근지역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변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 개발사업에 있어 녹지공간은 소음·진동 차단, 악취·미세먼지 저감 등 중요한 완충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소음 및 대기질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추후 반영	◦ 추후 실시설계시 폐도 등을 활용하여 완충녹지 조성 등의 대기질, 및 소음진동 영향을 최소화 하는 저감방안을 검토하겠음	

<표 2.1.3-1 계속> 주민, 관계행정 기관의 의견 및 반영여부

의견내용	반영여부		비고
-도로변, 교차로, 교통섬, 폐도, 잔여부지 등에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완충 녹지대로 조성	추후반영	-도로변, 교차로, 교통섬, 폐도, 잔여부지 등에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완충 녹지대로 조성을 검토하겠음	
◦ 배출허용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주거지역, 축사 등에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주민, 관계기관과 협의 절차를 거쳐 민원해소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반영	◦ 환경목표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공사시 민원이 발생될 경우 즉각 민원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적절한 저감대책을 강구할 계획임	
◦ 운영시에도 교통량 증가에 따라 다수지점에서 소음기준 초과로 생활환경 피해가 우려되므로 과학적인 최신공법의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규제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함.	반영	◦ 저소음포장, 방음벽 설치를 통해 도로교통소음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 특히, 공사시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변지역에 민원(환경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 ※ (참고)『환경분쟁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환경부, 2008)	반영	◦ 주거밀집지역, 학교 등 주요 정온시설의 경우 공사 시행 전 주민대표 및 관계자와 협의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임	
◦ 계획노선의 지반조건에 따라 침하, 함몰, 시설물 붕괴 등 이차적인 환경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획노선 내 주요 시설물, 주요 절·성토 비탈면 발생지점에 대해 지반조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사업으로 인해 지반이 영향을 받는 정도를 예측하고, 지반불안정이 예상되는 경우, 공사시 및 공사후 지반의 안정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추후반영	◦ 계획노선 내 주요 절·성토 발생지점에 대해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사면 안정성 검토 및 연약지반 현황 등을 반영하여 안정대책을 수립할 계획임	
◦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건설, 생활, 폐유 등)로 인하여 주변 환경오염 등 환경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처리 및 재활용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반영	◦ 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로 인하여 주변 환경오염 등 환경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에 따른 적정처리대책 및 재활용대책을 수립함	
◦ 동사업이「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할 경우에는「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7-175호)에 따라 순환골재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반영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7-175호)에 의거하여 공사시 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으로 순환골재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계획함	

<표 2.1.3-1 계속> 주민, 관계행정 기관의 의견 및 반영여부

의견내용	반영여부		비고
◦사업노선 내 철거대상 지장물이 다수 존재하기에 철거대상 지장물 지역의 토양오염 여부 및 지장물 철거에 따른 토양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업노선 내 토양오염 현황을 파악하여 제시하여야 함.	추후 반영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중 토양오염우려가 있는 시설물(주유소, 정비소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노선계획이 확정되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시 토양오염 가능성 조사 후 제시하겠음	
-토양오염이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확인된 시설 및 지역에 대해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여 오염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반영	-현황조사시 S-1,2 지점에서 불소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바, 환경영향평가시 상기 지점을 포함하여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발파시 화약 잔류성분으로 인한 토양오염 및 위해성 등에 대한 영향여부를 예측하고,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반영	◦발파시 폭약 사용에 의한 중금속 및 화학잔류물질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바,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함	
◦운영시 배출가스 등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면부와 가로수에 환경정화수종을 선정·식재하고, 사업노선 주변 정온시설 및 축사 등이 위치하는 구간은 차폐·완충녹지 조성, 방음벽 설치 등 추가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반영	◦운영시 배출가스 등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면부와 가로수에 적합한 환경정화수종을 제시하였으며, 추후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수반되는 환경영향평가시에 차폐·완충녹지 조성, 방음벽 설치추가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겠음	
-건설장비 및 차량 운행 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하며, 수목 식재 시 탄소흡수 효과가 높은 수종선택을 적극 고려하여야 함.	반영	-건설장비 및 차량 운행 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수목 식재 시 탄소흡수 효과가 높은 수종선택을 제시함	
-온실가스 흡수기능을 갖는 녹지를 충분히 조성하여야 하며, 식재계획 수립시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등 탄소흡착 및 고정효과가 높은 수종을 검토하여야 함.	반영	-탄소흡착 및 고정효과가 높은 수종을 제시하였으며, 추후 실시설계시 온실가스 흡수기능을 갖는 녹지를 계획하겠음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건축물 해체·제거 사업 시행 시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반영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건축물 해체·제거 사업 시행 시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계획함	

<표 2.1.3-1 계속> 주민, 관계행정 기관의 의견 및 반영여부

의견내용	반영여부		비고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일 경우, 같은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인·허가 기관에서는 인·허가 등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규모 등을 부과기관(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자는 생태계 훼손면적에 따라 산정된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추후반영	◦ 본 계획은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 인·허가 등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규모 등을 부과기관(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에 통보하고, 부과금을 납부 하겠음	
◦ 본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신고 등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추후반영	◦ 본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신고 등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하겠음	
1.하천과			
◦ 하천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며 하천의 자연성과 생태·환경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반영	◦ 하천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였으며, 하천의 자연성과 생태·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함	
◦ 지방하천(진산천, 삼가천, 기사천, 오룡천)에 관련된 사항은 하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계획내용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단계에서 별도 협의하여야 함. ※ 지방하천 진산천은 현재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임.	추후반영	◦ 지방하천(진산천, 삼가천, 기사천, 오룡천)에 관련된 사항은 추후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시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할 계획임	
◦ 소하천(만악천, 엄정천)에 관련된 사항은 금산군 해당 부서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추후반영	◦ 소하천(만악천, 엄정천)에 관련된 사항을 금산군 해당부서와 별도 협의하겠음	
2. 산림자원과			
◦ 도로구역결정 절차 이행 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협의절차를 이행하되, 동법 제18조,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복구설계서승인기준에 충족되도록 설계에 반영	추후반영	◦ 도로구역결정 절차 이행 시 「산지관리법」 에 따른 협의절차를 이행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복구설계서승인기준에 충족되도록 설계에 반영하겠음	

<표 2.1.3-1 계속> 주민, 관계행정 기관의 의견 및 반영여부

의견내용	반영여부		비고
◦편입 산지 중 국·공유지의 경우 재산관리 소관부서와 별도 협의하여야 하며, 산지면적이 30만㎡ 이상일 경우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미리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실시하고 그 내용을 향후 도로구역 변경 협의 서류에 첨부	추후 반영	◦편입 산지 중 국·공유지의 경우 재산관리 소관부서와 별도 협의하겠음	
◦도로구역 토지에 수형목, 보호수가 생육하는 산지가 편입되지 않도록 하되 불가피할 경우 금산군과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원형으로 보전하거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이식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	반영	◦현재 도로구역에 수형목과 보호수의 편입은 없으나 향후 계획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금산군과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원형으로 보전하거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이식계획을 수립하겠음	
◦실시설계 시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산지전용 협의 절차 시 첨부하되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작성기준 및 자격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용역비 등 소요예산이 적정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추후 반영	◦실시설계 시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산지전용 협의 절차 시 첨부하고 작성기준 및 자격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용역비 등 소요예산이 적정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능선방향 단면의 절취고가 해당 도로의 표준터널 단면 유효높이의 3배 이상일 경우에는 지형여건에 따라 터널 또는 개착터널을 설치하여 주변 산림과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에 반영	반영	◦기존노선을 최대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터널설치가 필요한 구간은 없음	
◦토공, 구조물 및 복구계획 수립 시 반드시 관계전문가가 참여하여 관계법령에 부합되고 재해에 안전한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하며, 편입 토지 내 소나무류에 대하여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규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여부를 검토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반영	반영	◦복구계획 수립시 관계전문가가 참여토록 할 계획이며, 계획노선 일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	
◦절·성토사면을 완만하게 처리하여 안정각을 유지하되 암반 비탈면의 경우에는 자연 표토복원공법 등으로 완벽하게 피복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산림 내 표토의 경우 식물 생육에 유익한 토양자원이므로 별도의 채취 및 보관방안을 마련하여 복구 및 녹지 복원용으로 활용 조치	추후 반영	◦절·성토 사면은 추후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시 사면 안정성 검토 및 사면보호공법 등을 설계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며, 발생 비옥토는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정장소에 적치하여 사면 식재용, 녹지 복원용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표 2.1.3-1 계속> 주민, 관계행정 기관의 의견 및 반영여부

의견내용	반영여부		비고
◦산림의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임목을 조경수, 원목자재, 연료목재, 톱밥 등으로 최대한 재활용하여 폐기물처리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산림자원 활용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	반영	◦훼손수목은 조경수, 원목자재, 연료목재, 톱밥 등으로 최대한 재활용하여 폐기물처리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산림자원 활용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함	
◦토목공사는 단계별로 실시토록 계획하고 산지전용이 완료된 부분은 중간 복구하거나 토사유출 방지시설·침사지 및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에 반영.	반영	◦토공사는 단계별로 실시하며,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주변 농경지, 하류 수계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임	
3. 도로철도항공과			
◦주거밀집지역(부암1리 마을, 금성면 소재지, 양전1리 마을) 통과구간은 주민의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노선을 결정하여야 함.	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함	
◦노선계획 시 토지 및 지장물 편입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농경지(과수원) 편입 시 편측으로 편입되도록 하고, 부득이 중앙부 통과 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통로박스 설치 등으로 우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부득이 지장물(가옥) 편입 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전체 면적을 편입하는 방안 강구하여야 함.	반영 반영 추후반영	◦토지 및 지장물 편입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함 -농경지(과수원) 편입 시 편측으로 편입되도록 계획함 -지장물 편입에 대한 보상진행 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음	
◦대규모 절·성토 공사에 따라 수질오염을 저감할 수 있도록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토사유실로 인하여 주변 농경지, 농수로, 하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반영	◦토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주변 농경지, 하류수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계획을 수립함	
◦공사 및 운영 시 정온시설 등에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준초과 또는 민원발생 시 추가 저감 대책(민원해소방안 포함)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저소음 포장공법 적용, 집단시설지구 및 주거지역 통과 구간 방음벽 설치 등	반영 반영	◦공사시 및 운영시 소음·진동저감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기준초과 또는 민원발생시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저소음포장, 방음벽 설치를 통해 도로교통소음을 최소화 할 계획임	

<표 2.1.3-1 계속> 주민, 관계행정 기관의 의견 및 반영여부

의견내용	반영여부		비고
◦특히 건설기계 운행, 항타작업, 발파 작업 시 또는 기타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변 지역에 민원(환경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속도제한, 작업시간 제한, 방음벽 설치, 음향시설, 트랜치, 저소음공법 적용 등	반영 반영	◦공사시 장비투입, 발파 등에 따른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주민협의를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계획임 -공사장비 속도제한, 작업시간 조정, 가설방음판넬 설치 등을 계획함	
◦사업 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상 영향이 예상될 경우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협의하여 서식공간, 이동경로 등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계획노선 주변의 조사·분석된 야생동물의 서식 및 이동로 현황에 따른 임야 단절구간 생태통로 설치, 로드킬 예방을 위한 유도울타리·측구탈출로 등 설치	반영 추후 반영	◦계획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이 예상될 경우 「개발사업 생태계훼손사고 대응매뉴얼 구축(KEI, 2010)」를 참조하여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야생동물 이동로 단절 예상구간을 제시하였으며, 현재 노선선정 단계로서 추후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시 구체적인 저감시설 설치를 제시하겠음	
◦주변 생태 및 녹지현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기존 녹지를 단절하지 않고, 구역 내·외부의 녹지가 연결되도록 하며, 절개지는 사면녹화를 반영하여야 함.	반영	◦주변 생태 및 녹지현황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기존 녹지를 최대한 보전하며, 절·성토 구간은 사면녹화를 실시할 계획임	
◦관로 매설 시에는 지형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 도로, 보행로 등 현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설계에 반영하고, 상·하수도관, 통신케이블, 송유관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지하매설물 파손으로 인한 토양·지하수 오염 등 환경적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추후 반영	◦관로 매설 시 지형변화를 최소화하고 현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설계에 반영하고, 상·하수도관, 통신케이블, 송유관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지하매설물 파손으로 인한 토양·지하수 오염 등 환경적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법정도로, 농로, 마을안길 등이 단절되지 않도록 통로암거 설치, 육교 및 부체도로 등을 설치하고 주변 개발계획과 교통수요, 농기계의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충분한 폭원 및 높이를 적용하여야 함.	반영	◦법정도로, 농로, 마을안길 등이 단절되지 않도록 설계하였으며, 주변 개발계획과 교통수요, 농기계의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충분한 폭원 및 높이를 적용함	
◦집중호우 시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주택·농경지(특용작물 등)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구조물의 충분한 단면을 확보하여야 함.	추후 반영	◦추후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시 구체적인 배수구조물 설치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표 2.1.3-1 계속> 주민, 관계행정 기관의 의견 및 반영여부

의견내용	반영여부		비고
◦하천횡단 교량 설치 구간은 하천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설계하되, 접속도로 종단 상향에 따른 민원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함.	추후반영	◦교량 설치구간은 추후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시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할 계획이며, 접속도로 종단 상향에 따른 민원 등을 고려하여 계획함	
◦구조물(교량) 설치시 우회도로 또는 가설교량 반영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반영	◦구조물 설치시 우회도로 또는 가설교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	
◦도로 사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도내 생산제품 적극 활용 검토	추후반영	◦각종 자재는 도내 생산제품 활용을 적극 검토하겠음	
4. 환경안전관리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등이「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건설공사(공사구간이 1킬로미터이상 또는 포장면적이 9,000제곱미터 이상) 등을 시행하는 경우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반영	◦본 사업은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므로, 공사시 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으로 순환골재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계획함	
◦공사 시 비산먼지 등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억제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반영	◦공사 시 비산먼지 등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억제대책을 수립함	
◦사업시행 시 발생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 영향 예측 결과 일부지역 환경목표기준이 초과함에 따라 정온시설 등에 소음·진동 영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주민들의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사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	반영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저감방안을 수립하였으며,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주민 대표 및 관계자와 사전에 협의토록 계획함	
◦폐기물로 인하여 주변 환경오염 등 환경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관리법」과「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처리 및 재활용대책을 강구·수립하여야 함.	반영	◦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로 인하여 주변 환경오염 등 환경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에 따른 적정처리대책 및 재활용대책을 수립함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신고) 등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추후반영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신고) 등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겠음	

<표 2.1.3-1 계속> 주민, 관계행정 기관의 의견 및 반영여부

의견내용	반영여부		비고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역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 등 이해당사자들과 갈등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협의 및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해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 환경피해 및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반영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을 시행함	
5. 물관리정책과			
◦ 금산진산~금산(국지도68호선) 도로건설공사는 사업추진으로 주변 농경지 및 하천등 지속적인 악영향을 줄 것으로 검토, 총괄 대안 마련 필요.	반영	◦ 계획노선 공사시 주변 농경지 및 하류수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함	
◦ 공사 추진시 토사유실로 인해 계획노선 주변 농경지 및 하천이 등으로 준설토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수립·이행해야 함. *계획노선 하천 오탁방지막 설치구간 증감 설치	반영	◦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 농경지 및 하천 등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를 설치할 계획이며, 추후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시 오탁방지막 설치계획을 수립하겠음	
◦ 특히, 우기 시 집중 호우에 따른 우수유출수를 저감하기 위해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용량을 증설하고, 우기시 절·성토 공사 중지, 장비로 인한 유류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함.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설치대상은 아니지만 저감방안 수립시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준하는 대안 마련	반영	◦ 우기시 집중 호우에 따른 우수유출을 저감하기 위해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를 충분한 규모로 계획하였으며, 본 계획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72조(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에 의거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사업에 해당하므로 추후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 공사시 및 운영시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기법을 적용하여 불투수면 최소화, 강우유출수 등을 하천등으로 직접 유출 시키지 않고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하여 지하수량 유지, 개발전 자연 상태의 물순환 체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함.	추후 반영	◦ 추후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시 계획노선내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등에 투수성포장, 투수블럭 설치 등을 검토할 계획임	
◦ 아울러, 총괄의견 및 분야별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하고 사업추진시 저감방안 등을 이행하여 환경영향을 사전예방 및 최소화 해야 함.	반영	◦ 총괄의견 및 분야별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및 사업추진시 저감방안 등을 이행할 계획임	

<표 2.1.3-1 계속> 주민, 관계행정 기관의 의견 및 반영여부

의견내용	반영여부		비고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지역을 금산군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지역개발 부하량을 할당 받아야 함	추후 반영	◦추후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시 수질오염총량을 할당 받는 것으로 금산군과 협의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9조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변동)등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대상 (물 사용량의 10% 이상 재이용)에 해당할 경우 설치·운영 해야 하며 설치결과를 금산군에 신고해야 함	반영	◦본 계획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변동) 등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도로건설로 소멸되는 지하수가 발생할 경우 금산군 지하수 담당 부서와 협의 해야 함.	반영	◦도로건설로 소멸되는 지하수 발생시 금산군 담당부서와 협의하겠음	
6. 문화유산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지표조사의 대상사업 등)에 따라 사업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지표조사를 시행하시기 바람	추후 반영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지표조사를 시행하겠음	
◦동 사업 구간 내에 매장문화재유존지역이 확인되므로 사업실시 계획 완료 전 보존조치 협의를 완료하시기 바람. - 매장문화재유존지역 구간 : 1) 금산군 부암리 선형개량구간(부암리 142-2도 일원) 2) 부안리 75-4도 일원 3) 만악리 691-2도(금산 만악리 괸돌 고인돌, 만악리 지석묘) 4) 상가리 376-1 답 일원(상가리 금곡 원터) 5) 하류리 508-6도 일원(양지말 하류교) 6) 양전리 522-15 일원 - 매장문화유재유존지역 4천제곱미터 이상 문화재청, 미만은 충남도청 협의 사항	추후 반영	◦실시계획 완료 전 매장문화재유존지역에 대한 보존조치 협의를 완료하겠음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1조(도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따라 사업 시행 계획 완료 전 문화재 현상 변경 등의 허가를 충남도청으로부터 득하시기 바람. - 현상변경 등의 허가 대상 문화재 : 1) 금산 충렬사(충남문화재자료 제17호) 2) 고경명 선생비(충남문화재자료 제28호)	추후 반영	◦사업 시행 계획 완료 전 문화재 현상 변경 등의 허가를 충남도청으로부터 득하겠음	

<표 2.1.3-1 계속> 주민, 관계행정 기관의 의견 및 반영여부

의견내용	반영여부		비고
7. 푸른하늘기획과			
◦동 평가서는 도로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피해 최소화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으로 공사시 발생되는 비산먼지 저감방안 등이 반영됨	반영	◦동 평가서는 도로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피해 최소화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으로 공사 시 발생되는 비산먼지 저감방안 등을 반영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영시간 단축·조정, 살수차 증대 등 저감방안이 미포함되어 있으며,「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대기관리권역에서 총 공사금액 100억 이상의 토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의 사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동 사항에 대한 반영이 필요함.	반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영시간 단축·조정, 살수차 증대 등 저감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본 계획노선이 위치한 금산군은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지 않으나, 추후 실시설계시 권장토록 할 계획임	
◦아울러, 대기질부문 운영시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이 기술되어 있으나, 계획의 실효성 또는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내용이 부족함.	추후 반영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도로시설물을 제시하였으며 추후 노선이 확정되는 환경영향평가시 적용이 가능한 도로시설물을 검토 후 적용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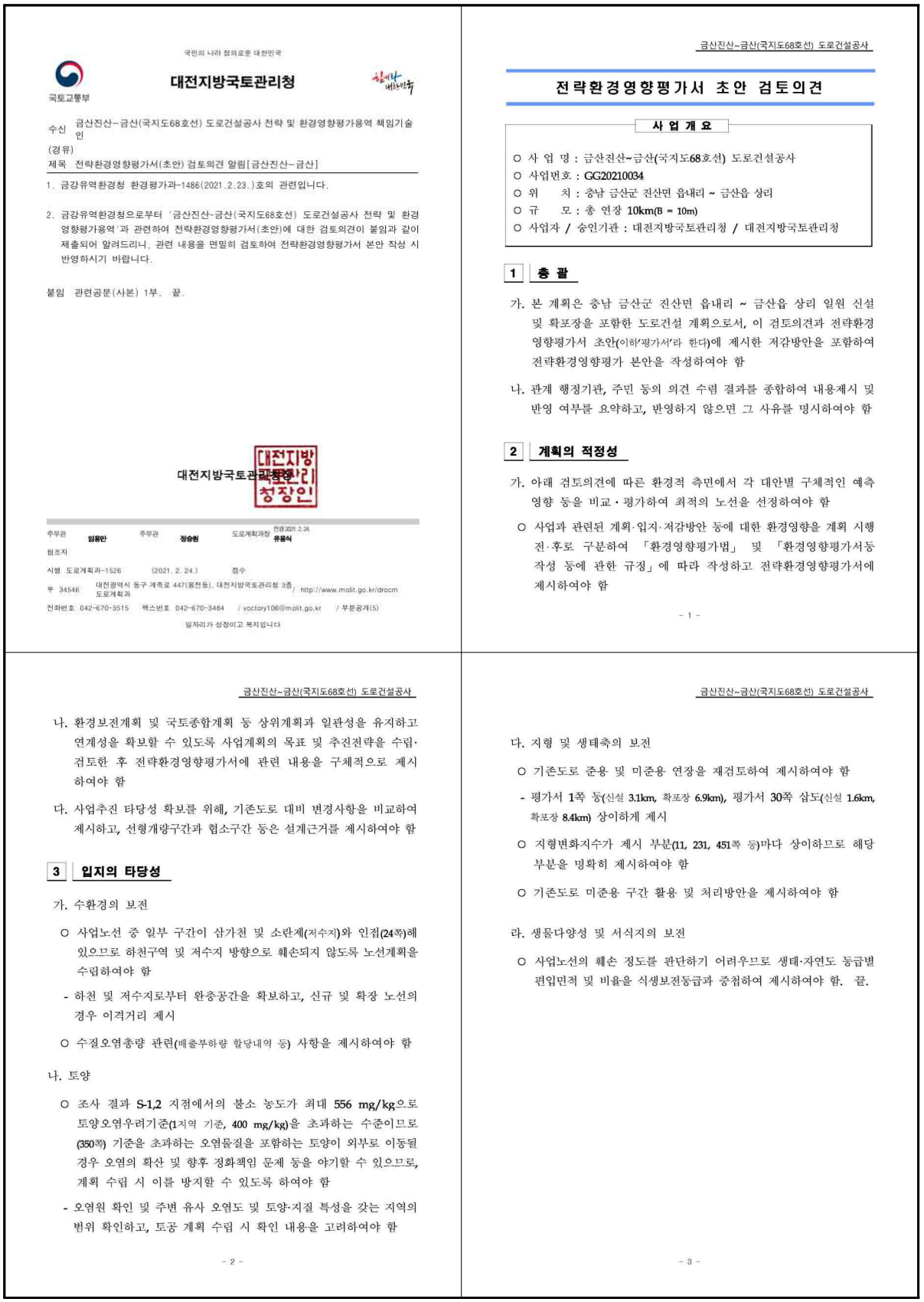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신 금산진산~금산(국지도68호선) 도로건설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용역 책임기술인
(경유)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알림[금산진산~금산]

1.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1486(2021.2.23.)호의 관련입니다.

2.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금산진산~금산(국지도68호선) 도로건설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용역'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붙임과 같이 제출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공문(사본) 1부. 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인

주무관 임용만 주무관 정승원 도로계획과장 전결 2021.2.24. 유용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526 (2021. 2. 24.) 접수
우 34546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대전지방국토관리청 3층 도로계획과 / http://www.molit.go.kr/drocm
전화번호 042-670-3515 팩스번호 042-670-3484 / voctory106@molit.go.kr / 부분공개(5)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금산진산~금산(국지도68호선) 도로건설공사
○ 사업번호 : GG20210034
○ 위 치 : 충남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 ~ 금산읍 상리
○ 규 모 : 총 연장 10km(B = 10m)
○ 사업자 / 승인기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 총 괄

가. 본 계획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 ~ 금산읍 상리 일원 신설 및 확포장을 포함한 도로건설 계획으로서, 이 검토의견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평가서'라 한다)에 제시한 저감방안을 포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작성하여야 함

나. 관계 행정기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내용제시 및 반영 여부를 요약하고, 반영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2 계획의 적정성

가. 아래 검토의견에 따른 환경적 측면에서 각 대안별 구체적인 예측영향 등을 비교·평가하여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여야 함

○ 사업과 관련된 계획·입지·저감방안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획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여야 함

나. 환경보전계획 및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을 수립·검토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다. 사업추진 타당성 확보를 위해, 기존도로 대비 변경사항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선형개량구간과 협소구간 등은 설계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3 입지의 타당성

가. 수환경의 보전

○ 사업노선 중 일부 구간이 삼가천 및 소란제(저수지)와 인접(24쪽)해 있으므로 하천구역 및 저수지 방향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하천 및 저수지로부터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신규 및 확장 노선의 경우 이격거리 제시

○ 수질오염총량 관련(배출부하량 할당내역 등) 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나. 토양

○ 조사 결과 S-1,2 지점에서의 불소 농도가 최대 556 mg/kg으로 토양오염우려기준(1지역 기준, 400 mg/kg)을 초과하는 수준이므로 (350쪽)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포함하는 토양이 외부로 이동될 경우 오염의 확산 및 향후 정화책임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계획 수립 시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오염원 확인 및 주변 유사 오염도 및 토양·지질 특성을 갖는 지역의 범위 확인하고, 토공 계획 수립 시 확인 내용을 고려하여야 함

다. 지형 및 생태측의 보전

○ 기존도로 준용 및 미준용 연장을 재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함

- 평가서 1쪽 등(신설 3.1km, 확포장 6.9km), 평가서 30쪽 삽도(신설 1.6km, 확포장 8.4km) 상이하게 제시

○ 지형변화지수가 제시 부분(11, 231, 451쪽 등)마다 상이하므로 해당 부분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기존도로 미준용 구간 활용 및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라.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의 보전

○ 사업노선의 훼손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생태·자연도 등급별 편입면적 및 비율을 식생보전등급과 중첩하여 제시하여야 함. 끝.

(그림 2.1.3-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관계 행정기관 검토의견

청명韓 금산은 '나'로부터

금 산 군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금산 진산~금산(국지도68호선)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 회신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556(2021.01.2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금산진산~금산]")호와 관련됩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의견 수렴한 결과 **의견 없음**을 회신합니다. 끝.

금 산 군 수

주무관 안한빈 도로팀장 박귀환 건설교통과장 전결 2021.3.8 육창우
협조자
시행 건설교통과-20780 (2021. 3. 8.) 접수 도로계획과-2005 (2021. 3. 8.)
우 32733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창길 13, (금산군청) / http://www.geumsan.go.kr
전화번호 041-750-2712 팩스번호 041)751-6297 / hanbin7678@korea.kr / 대국민 공개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

양극화 해소, 더불어 잘 사는 더 행복한 충남

충청남도

충 청 남 도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금산진산~금산(국지도68호선)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회신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556(2021.1.21.)호와 관련입니다.
2. "금산진산~금산(국지도68호선)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1부. 끝.

충청남도지사

주무관 유용재 환경협력교육팀장 김학중 기후환경정책과장 전결 2021.3.4 권영택
협조자 주무관 박유리
시행 기후환경정책과-3428 (2021. 3. 4.) 접수 도로계획과-1802 (2021. 3. 4.)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기후환경정책과 / http://www.chungnam.go.kr
전화번호 041-635-4414 팩스번호 041-635-3064 / mryyj@korea.kr / 부분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 금산진산~금산(국지도68호선) 도로건설공사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 계획 개요

- ❍ 계획명 : 금산진산~금산(국지도68호선) 도로건설공사
- ❍ 위 치 : 충남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금산군 금산읍 상리
- ❍ 규 모 : 10.0km(신설 3.1, 확장 6.9)
- ❍ 사업비 : 497.7억원 ❍ 기간(설계) : 2020.3. ~ 2022.3.
- ❍ 계획수립자 / 승인기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검토의견

- ❍ 본건은 국지도68호선 중 금산군 진산면~금산읍 구간의 선형 불량 및 도로폭 협소 구간을 개량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지역발전 촉진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으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난개발을 지양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 ❍ 금회 계획노선 중 생태·환경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포함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발을 지양하고,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 사업 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주변 생활환경 영향 등이 최소화 되도록 개발 규모의 적정성과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의 피해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 ❍ 환경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며, 지역주민 등이 환경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극 검토·조치하고, 사업 승인기관(사업시행자) 책임하에 민원을 해결하여야 함.
- ❍ 본 검토의견 및 평가서에 제시한 환경저감방안을 충실히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본 검토내용 이행과 관련하여 타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 주변 기존 도로의 활용성, 교통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 접근성, 안전성, 향후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훼손이 최소화하는 사업계획 수립 및 대안을 설정하여야 함.
- ❍ 개발사업 시행으로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별도관리지역,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산림축, 자연공원, 노거수, 보호수 등)은 우회하거나 계획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부득이 계획노선에 포함시켜야 할 경우에는 면밀한 환경적 입지검토가 요구됨.
  - 도로 개설로 인해 지역 생태축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의 훼손·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선의 우회 또는 기 개설된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함.
- ❍ 바람길(주풍향)을 고려하고, 생태자연도 및 비오톱 지도 등을 활용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생태자연도 2등급이면서 생태·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국토환경성 평가등급 1, 2등급지역, 비오톱 1, 2등급 지역이 위치할 경우, 이 지역의 경우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므로 사업계획시 면밀한 검토 및 생태적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금회 사업지역에 대해 식생보전등급 2등급 이상(도시지역은 3등급 이상), 식생보전등급 3등급 이상(도시지역은 4등급 이상)으로서 급경사지(경사도 20도) 이상의 지역에 해당되는지를 제시하고, 해당될 경우에는 환경 관련 입지의 중점검토가 필요함.
- ❍ 사업노선 계획시 주변 현황, 노선 구배, 절성토 최소화, 마을 우회 등 모두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훼손 수목에 대한 이식 예정 수목량을 총 훼손 수목량의 10% 이상으로 검토하고, 착공 후 보전·이식 가치가 높은 수종이 발견될 경우 추가적인 이식활용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 사업 시행시 절·성토 발생으로 인한 지형의 변화 최소화 및 사면 붕괴 등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면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주변지역의 환경과 이질적이지 않은 토지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 지구내에서 발생하는 비옥토, 식생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그림 2.1.3-1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관계 행정기관 검토의견

❍ 과도한 절성토는 가급적 지양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으로 지형변화는 불가피한 만큼 주변 지형과 경관상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 녹화 및 복원계획을 수립 제시하여야 함.

❍ 또한, 사업시행으로 흠깎기 및 쌓기에 따른 지형변화와 구조물 설치에 따른 경관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을 중심으로 적정 조망점을 선정하고, 경관시뮬레이션 예측을 통해 친환경적인 경관영향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교량 등 각종 구조물 설치 계획 수립시에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색채, 디자인 적용 등을 반영한 경관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성토 및 교량 등 설치로 인한 일조피해 예상지역은 공사 시행전 면적, 재배작물 등의 조사 등이 이루어진 후 일조방해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으로 편입하거나 피해보상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시행에 따른 사면 발생구간은 식생 활착, 사면붕괴 예방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완경사로 계획하고, 조속한 생태복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도로 조명으로 인하여 야생동물의 서식지 및 농작물의 경작, 인근 주거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예측·분석하고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금강수계 유등A, 금본D)으로 개발계획시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역개발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함.

❍ 우천시에는 공사를 지양하고 유류가 묻은 장비, 폐유 등은 야외 적치를 금지하는 등 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수계 및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함.

❍ 공사 및 운영시 발생하는 토사 및 비점오염물질 등이 하류 수계 및 농경지에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수계(배수로, 농수로, 하천 등) 및 수질 현황, 배수유역 등을 고려하여 적정 저감대책(토사 유출 최소화, 우수배제 및 비점오염원 저감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

- 우기시 절·성토 공사를 자제하고, 지구 경계지역에 가배수로 설치, 배수구역별 충분한 규모의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 등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유류 유출에 대비하여 오일휀스, 유흡착포 등을 충분히 비치하여야 함.

- 집중호우 등에 대비, 배수구역별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규모의 침사지가 설치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설치 지점, 규모 등을 제시하고, 이들 시설은 조기에 설치되어야 하며 침사지 기능을 항시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준설 등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함.

- 진산천교, 유등천교 등 교량이 하천을 관통하기에 교량 설치작업 등으로 인한 탁수, 토사 등이 배수로를 통해 하류수계 및 인근 농경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강화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현장사무소 설치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이 적정 처리되어 방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운영시 도로 노면 등 비점오염물질이 우수와 함께 수계로 유입되지 않도록 초기우수 배제계획 및 구체적인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계획(설치시설, 위치, 운영관리 등)을 수립하는 등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금회 계획노선 중 하천을 점용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수환경 보전을 위해 재검토하여 신설 및 개발을 지양하고, 사업시행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사업노선 인근에 광산(폐광산, 석면광산 등)이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공사로 인한 중금속, 석면 유출 등 환경피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업 착공 전에 사업지구내 분포하는 지하수 관정을 상세히 조사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폐공 또는 폐쇄 조치하고, 그 결과는 증빙 자료와 함께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보존하는 등 주기적으로 조사·관리하여야 함.

❍ 사업시행에 따라 녹지축 및 동물이동로 단절로 인하여 각종 야생동물의 서식 및 이동에 영향이 예상되므로 기존 도로와 계획노선의 단절구간에 대한 야생동물의 보호 및 이동통로 확보를 위하여 생태이동통로, 유도휀스 및 생태측구 등의 시설을 적정 설치·운영하고, 추후 도로 이용시 동 노선내 로드킬 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추가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현지조사 결과, 법정보호종(수달, 황조롱이)이 발견됨에 따라 확인된 법정보호종 등에 대하여 공사 전에 서식지 등을 조사하고, 공사 및 운영시 법정보호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서식, 번식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서식지 등을 발견할 경우 해당 종에 맞는 대책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현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될 경우, 관련 공사를 중단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절한 보전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 수로박스 및 횡배수관은 야생동물이 이동통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 지침(환경부, 2010.6.)」을 준수하여 녹지축 단절 및 로드킬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생태교량 등을 설치하고, 생태통로 진입부 등은 주변 지형과 식생 등을 고려하여 자생수종이나 식이식물 위주로 설치하여야 함.

❍ 도로 개설에 따른 동물 이동의 단절 및 로드킬 가능성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동물이동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도로 구간내 출현 및 출현 가능성이 있는 동물상을 반영하여 도로공사에 따른 동물의 이동단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정위치에 적정 규모의 저감 시설물 설치를 검토

- 생물이동 단절 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물 계획 제시

- 사업시행으로 인한 생태적 연결성 단절 및 로드킬 방지 등을 위해 야생동물의 출현빈도가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선형 우회, 생태통로 및 유도울타리 설치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수립하여야 함.

- 논과 같이 습한 환경을 이루고 있거나, 소형동물의 출현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은 측구, 배수로, 농수로 등에 탈출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 불필요한 투명방음벽 설치 최소화 및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 에 따라 피해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내 생태계교란식물인 환삼덩굴, 단풍잎돼지풀의 서식이 확인됨에 따라 확산방지 및 제거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저영향개발기법(LID)은 도로, 주택단지, 건축물, 가로수 등 곳곳에서 기능할 수 있는 여러방법이 고안됐으며, 수질개선, 열섬현상 완화, 온실가스 저감, 공기질 개선, 지하수 함양 증가, 경관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수반하며 생태계의 자정능력을 살리는데 크게 이바지하므로 적용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야 함.

-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등은 불투수성 콘크리트·아스팔트 대신 공극이 있는 투수성 포장 적용

❍ 공사 및 운영시 대기오염물질 환경영향에 대해 예측하여 예측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지 제시하고, 공사 및 운영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공사시 비산먼지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 인근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바, 공사시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작업 중 비산먼지 발생으로 주변 지역에 영향이 예상되므로 토사 상·하차시 살수 및 세륜시설 관리 강화, 방진막 설치 보강, 차량 및 적치장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저감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계획노선에 다수의 주거시설 및 학교가 연접해 있어 공사시 공사장비 등 투입장비에 의한 예상 소음·진동도가 소음·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합리적인 최적 노선 선정 및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추가 저감대책(공사차량 저속운행, 가설방음판넬 설치, 저소음·저진동 장비 사용, 작업시간 조정 등)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민원발생 지역 및 모니터링 결과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의 경우, 기준을 준수토록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발파시 소음·진동 영향예측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함.

- 주변 학교의 경우, 공사 시행 전 학교 관계자와 사전협의를 실시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가설방음판넬 및 방음벽 설치 시에는 조망권, 통풍 및 마을 출입차량의 안전을 고려하여 사전에 주민과 협의하고, 주변 경관과 외부조망을 고려한 방음판의 재질 및 색체를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수목 식재 등 녹화공법 도입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 인공구조물 설치로 인한 이질감 및 부조화를 최소화하여야 함.

(그림 2.1.3-1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관계 행정기관 검토의견

❍ 공사시 발파작업 등으로 인근 주거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전문가 입회하에 시험발파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장약량의 최소화, 소규모 발파, 발파 사전예고제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파시(시험발파 포함) 소음·진동도를 측정하여 측정결과 인근지역의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별도의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개발사업에 있어 녹지공간은 소음·진동 차단, 악취·미세먼지 저감 등 중요한 완충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소음 및 대기질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도로변, 교차로, 교통섬, 폐도, 잔여부지 등에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완충 녹지대로 조성

❍ 배출허용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주거지역, 축사 등에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주민, 관계기관과 협의 절차를 거쳐 민원해소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운영시에도 교통량 증가에 따라 다수 지점에서 소음기준 초과로 생활환경 피해가 우려되므로 과학적인 최신공법의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규제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함.

❍ 특히, 공사시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변지역에 민원(환경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

※ (참고) 『환경분쟁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환경부, 2008)

❍ 계획노선의 지반조건에 따라 침하, 함몰, 시설물 붕괴 등 이차적인 환경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획노선 내 주요 시설물, 주요 절·성토 비탈면 발생지점에 대해 지반조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사업으로 인해 지반이 영향을 받는 정도를 예측하고, 지반 불안정이 예상되는 경우, 공사시 및 공사후 지반의 안정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건설, 생활, 폐유 등)로 인하여 주변 환경오염 등 환경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 처리 및 재활용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동사업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할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7-175호)에 따라 순환골재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사업노선 내 철거대상 지장물이 다수 존재하기에 철거대상 지장물 지역의 토양오염 여부 및 지장물 철거에 따른 토양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업노선 내 토양오염 현황을 파악하여 제시하여야 함.

- 토양오염이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확인된 시설 및 지역에 대해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여 오염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발파시 화약 잔류성분으로 인한 토양오염 및 위해성 등에 대한 영향여부를 예측하고,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운영시 배출가스 등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면부와 가로수에 환경정화수종을 선정·식재하고, 사업노선 주변 정온시설 및 축사 등이 위치하는 구간은 차폐·완충녹지 조성, 방음벽 설치 등 추가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건설장비 및 차량 운행 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하며, 수목 식재 시 탄소흡수 효과가 높은 수종 선택을 적극 고려하여야 함.
- 온실가스 흡수기능을 갖는 녹지를 충분히 조성하여야 하며, 식재계획 수립시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등 탄소흡착 및 고정효과가 높은 수종을 검토하여야 함.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건축물 해체·제거 사업 시행 시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일 경우, 같은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인·허가기관에서는 인·허가 등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규모 등을 부과기관(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자는 생태계 훼손면적에 따라 산정된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 본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신고 등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하천과】

❍ 하천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며 하천의 자연성과 생태·환경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지방하천(진산천, 삼가천, 기사천, 오룡천)에 관련된 사항은 하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계획내용을 수립하여야 하며 설시설계 단계에서 별도 협의하여야 함.

※ 지방하천 진산천은 현재 하천기본계획 및 설시설계 용역 중임.

❍ 소하천(만악천, 염정천)에 관련된 사항은 금산군 해당 부서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농업정책과】

❍ 별도의견 없음

【산림자원과】

가. 도로구역결정 절차 이행 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협의절차를 이행하되, 동법 제18조,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복구설계서승인기준에 충족되도록 설계에 반영

나. 편입 산지 중 국·공유지의 경우 재산관리 소관부서와 별도 협의하여야 하며, 산지면적이 30만㎡ 이상일 경우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미리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실시하고 그 내용을 향후 도로구역 변경 협의서류에 첨부

다. 도로구역 토지에 수형목, 보호수가 생육하는 산지가 편입되지 않도록 하되 불가피할 경우 금산군과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원형으로 보전하거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이식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

라. 실시설계 시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산지전용협의 절차 시 첨부하되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작성기준 및 자격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용역비 등 소요예산이 적정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마. 능선방향 단면의 절취고가 해당 도로의 표준터널 단면 유효높이의 3배 이상일 경우에는 지형여건에 따라 터널 또는 개착터널을 설치하여 주변 산림과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에 반영

바. 토공, 구조물 및 복구계획 수립 시 반드시 관계전문가가 참여하여 관계 법령에 부합되고 재해에 안전한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하며, 편입 토지 내 소나무류에 대하여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규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여부를 검토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반영

사. 절·성토사면을 완만하게 처리하여 안정각을 유지하되 암반 비탈면의 경우에는 자연표토복원공법 등으로 완벽하게 피복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산림 내 표토의 경우 식물 생육에 유익한 토양자원이므로 별도의 채취 및 보관방안을 마련하여 복구 및 녹지 복원용으로 활용 조치

아. 산림의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임목을 조경수, 원목자재, 연료목재, 톱밥 등으로 최대한 재활용하여 폐기물처리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산림자원 활용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

자. 토목공사는 단계별로 실시토록 계획하고 산지전용이 완료된 부분은 중간복구하거나 토사유출 방지시설·침사지 및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에 반영.

【도로철도항공과】

1. 주거밀집지역(부암1리 마을, 금성면소재지, 양전1리 마을) 통과구간은 주민의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노선을 결정하여야 함.
2. 노선계획 시 토지 및 지장물 편입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 농경지(과수원) 편입 시 편측으로 편입되도록 하고, 부득이 중앙부 통과 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통로박스 설치 등으로 우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부득이 지장물(가옥) 편입 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전체 면적을 편입하는 방안 강구하여야 함.
3. 대규모 절·성토 공사에 따라 수질오염을 저감할 수 있도록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토사유실로 인하여 주변 농경지, 농수로, 하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4. 공사 및 운영 시 정온시설 등에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준초과 또는 민원발생 시 추가 저감 대책(민원해소방안 포함)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저소음 포장공법 적용, 집단시설지구 및 주거지역 통과 구간 방음벽 설치 등
5. 특히 건설기계 운행, 항타작업, 발파작업 시 또는 기타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변 지역에 민원(환경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속도제한, 작업시간 제한, 방음벽 설치, 음향시설, 트랜치, 저소음공법 적용 등
6. 사업 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상 영향이 예상될 경우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협의하여 서식공간, 이동경로 등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계획노선 주변의 조사·분석된 야생동물의 서식 및 이동로 현황에 따른 임야 단절구간 생태통로 설치, 로드킬 예방을 위한 유도울타리·측구탈출로 등 설치
7. 주변 생태 및 녹지현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기존 녹지를 단절하지 않고, 구역 내·외부의 녹지가 연결되도록 하며, 절개지는 사면녹화를 반영하여야 함.
8. 관로 매설 시에는 지형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존 도로, 보행로 등 현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설계에 반영하고, 상·하수도관, 통신케이블, 송유관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지하매설물 파손으로 인한 토양·지하수 오염 등 환경적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9. 법정도로, 농로, 마을안길 등이 단절되지 않도록 통로암거 설치, 육교 및 부체도로 등을 설치하고 주변 개발계획과 교통수요, 농기계의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충분한 폭원 및 높이를 적용하여야 함.
10. 집중호우 시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주택·농경지(특용작물 등)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구조물의 충분한 단면을 확보하여야 함.

(그림 2.1.3-1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관계 행정기관 검토의견

11. 하천횡단 교량 설치 구간은 하천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설계하되, 접속도로 종단 상향에 따른 민원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함.
12. 구조물(교량) 설치시 우회도로 또는 가설교량 반영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13. 도로 사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도내 생산제품 적극 활용 검토

【환경안전관리과】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등이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건설공사(공사구간이 1킬로미터 이상 또는 포장면적이 9,000제곱미터 이상) 등을 시행하는 경우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나. 공사 시 비산먼지 등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억제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다. 사업시행 시 발생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 영향 예측 결과 일부지역 환경목표기준이 초과함에 따라 정온시설 등에 소음·진동 영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주민들의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사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
라. 폐기물로 인하여 주변 환경오염 등 환경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처리 및 재활용대책을 강구·수립하여야 함.
마.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신고) 등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역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 등 이해당사자들과 갈등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협의 및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해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 환경피해 및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물관리정책과】

Ⅰ. 총괄 검토의견

❍ 금산진산~금산(국지도68호선) 도로 건설공사는 사업추진으로 주변 농경지 및 하천등 지속적인 악영향을 줄 것으로 검토, 총괄 대안 마련 필요.

❍ 공사 추진시 토사유실로 인해 계획노선 주변 농경지 및 하천이 등으로 준설토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저감 방안을 수립·이행해야 함.

* 계획노선 하천 오탁방지막 설치구간 증감 설치

❍ 특히, 우기 시 집중 호우에 따른 우수유출수를 저감하기 위해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용량을 증설하고, 우기시 절·성토 공사 중지, 장비로 인한 유류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을 수립·이행 해야 함.

*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설치대상은 아니지만 저감방안 수립시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준하는 대안 마련

❍ 공사시 및 운영시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을 적용하여 불투수면 최소화, 강우유출수 등을 하천등으로 직접 유출 시키지 않고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하여 지하수량 유지, 개발전 자연 상태의 물순환 체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아울러, 총괄의견 및 분야별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하고 사업추진시 저감방안 등을 이행하여 환경영향을 사전예방 및 최소화 해야 함.

Ⅱ. 분야별 검토의견

[유역관리]

❍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지역을 금산군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지역개발 부하량을 할당 받아야 함

[재이용]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변동)등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대상(물 사용량의 10% 이상 재이용)에 해당할 경우 설치·운영해야 하며 설치결과를 금산군에 신고해야 함

[지하수]

❍ 도로건설로 소멸되는 지하수가 발생할 경우 금산군 지하수 담당부서와 협의 해야 함.

【문화유산과】

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등)에 따라 사업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지표조사를 시행하시기 바람
나. 동 사업 구간 내에 매장문화재유존지역이 확인되므로 사업실시 계획 완료 전 보존조치 협의를 완료하시기 바람.
- 매장문화재유존지역 구간 : 1) 금산군 부암리 선형개량구간(부암리 142-2도 일원)
2) 부안리 75-4도 일원 3) 만악리 691-2도(금산 만악리 괸돌 고인돌, 만악리 지석묘)
4) 상가리 376-1 답 일원(상가리 금곡원터) 5) 하류리 508-6도 일원(양지말 하류교)
6) 양전리 522-15 일원
- 매장문화유재유존지역 4천제곱미터 이상 문화재청, 미만은 충남도청 협의 사항

다.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31조(도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따라 사업 시행 계획 완료 전 문화재 현상 변경 등의 허가를 충남도청으로부터 득하시기 바람.
- 현상변경 등의 허가 대상 문화재 : 1) 금산 충렬사(충남문화재자료 제17호)
2) 고경명 선생비(충남문화재자료 제28호)

【푸른하늘기획과】

가. 동 평가서는 도로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피해 최소화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으로 공사 시 발생되는 비산먼지 저감방안 등이 반영됨
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영시간 단축·조정, 살수차 증대 등 저감방안이 미포함되어 있으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대기관리권역에서 총 공사금액 100억 이상의 토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의 사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동 사항에 대한 반영이 필요함.
다. 아울러, 대기질부문 운영시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이 기술되어 있으나, 계획의 실효성 또는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내용이 부족함.

(그림 2.1.3-1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관계 행정기관 검토의견